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5-170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03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제재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보조금 부정수급 기업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을 실시합니다.

1. 공고사유

: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보조금 부정수급 기업에 대한 제재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제재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의 수행배제 등) 및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 및 제14조의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3. 제재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 보조금 부정수급

4. 공고기간 : 2025. 3. 11. ~ 3. 25. (2주 간)

* 공고기간 만료시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5. 공고사항

대상자	주소	제재내용
(주)본** (대표:박*현)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정주로48번길 23	1. 제재부가금 27,000,000원 부과 2. 보조금 지급제한 5년 (2024.5.23.~2029.5.22.)

6. 이의신청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 본 통지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메일 등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고,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위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됩니다.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유의사항

- 부과된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납금의 회수를 위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업무 위탁, 재산압류 및 매각 등의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담당부서

- 부서명: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 주소 : 세종시 가름로 180, 609호
- 문의처 : 044-204-7504/7509, hr0218@korea.kr/juners0518@korea.kr